

## 학생상담및지도에관한시행세칙

<제정 2015.02.25.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상담 및 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 및 정의)** 학생상담이라 함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재적하고 있거나 재적한 적이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진로 및 학사, 대학생활, 개인 심리 전반에 관한 상담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상담의 종류)** 학생상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TU멘토링 상담
2. 집단상담
3.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
4. 학사상담
5. 진로·취업상담
6. 그 외 각종 상담프로그램

**제4조(시기)** ① TU멘토링 상담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

- ② 개인상담, 학사상담, 진로·취업상담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.
- ③ 집단상담은 매 학기 또는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실시한다.
- ④ 영역별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연중 수시로 개설하여 실시한다.

**제5조(상담 종류별 상담사)** ① TU멘토링 상담의 상담사는 학생의 지도교수로 한다.

- ② 집단상담의 상담사는 센터의 전문상담원으로 한다.
- ③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의 상담사는 센터의 전문상담원 및 상담교수로 한다.
- ④ 학사상담의 상담사는 학사업무 담당자로 한다.
- ⑤ 진로에 관한 일반상담은 센터의 전문상담원이 담당하며 구체적인 취업상담이 필요한 경우 취업업무 담당자 및 소속 전문상담원을 담당자로 한다.
- ⑥ 각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사는 프로그램 개설 담당업무 부서원으로 한다.

**제6조(절차 및 내용)** ①TU멘토링 상담은 해당 학생 및 지도교수의 상호 요청에 의해 실시하며 상담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2.01.)

- ② 집단상담 및 상담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참가 신청하거나 학과 또는 지도교수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며 집단상담 주제 및 프로그램 내용은 개설시 따로 정한다.
- ③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는 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도교수의 연계지도에 의해 신청하고 실시하며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상담에 대한 사항은 따로 둔다.(개정 2017.12.01.)

- ④ 개인상담은 전문상담원과 초기면접 진행 후 상담 회기수를 정하거나 상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 개인상담 대상자중 자살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부 상담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.
- ⑥ 개인의 일반적인 학사관리에 관한 학사상담은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한다. (개정 2017.12.01., 2021.6.1.)
- ⑦ 학사상담중 학습법과 관련한 내용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하여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.
- ⑧ 진로상담을 희망할 경우 진로개발센터를 통하여 전문상담을 실시한다.(개정 2017.12.01.)
- ⑨ 취업상담을 희망할 경우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전문상담을 실시한다.(신설 2017.12.01.)

**제7조(만족도 조사)** 집단상담 및 상담프로그램은 상담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.

**제8조(상담결과 및 환류)** ① 상담이 종결되면 즉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- ② TU멘토링 상담은 상담내용을 상담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매 학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, 상담프로그램 등은 종결 후 세부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보고한다.
- ④ 학사관리팀은 학사상담을 학사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한다. (개정 2017.12.01., 2021.6.1.)
- ⑤ 상담 결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연 1회이상 환류하여 상담프로그램 개선 등에 활용한다.

**제9조(세부사항)**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